

청주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가단26782 판결 [사해행위취소(일부판결)]

전 문

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5. 2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746,067원 및 위 돈 중 10,737,723원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0. 7. 7.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2019. 1. 14.자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1. 4.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757,42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57,425원으로 경정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5. 4. 10. 피고 A의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25,000,000원, 보증기한 2016. 4. 7.(이후 2019. 4. 7.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D은행에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 보증료,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D은행으로부터 2015. 4. 10.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2019. 4. 9. 피고 A이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9. 8. 8. D은행에 12,122,1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1,384,420원을 회수하고 8,344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0,737,723원이고, 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마. 피고 A은 2019. 1. 14.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 1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631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D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E)에서 2021. 3. 2.

F에게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21. 4. 8. 피고 B에게 2,757,425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이 도과하기 전인 2021. 4. 14.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10,746,067원 및 그 중 10,737,72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7. 7.까지 약정 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보다 앞선 2015. 4. 10.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3달 정도 지난 2019. 4. 9. 피고 A이 위 대출계약의 원리금을 연체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9. 8. 8.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중 1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

1)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 16. 피고 A에게 실제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는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채권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57,425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757,42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

별 지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동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2층 호 59.9718㎡대지권의 표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장용지

207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비율 2075분의 76.8518